

# 2024년 2-J차 보육실습 안내문

## ▶ 강의 세부 일정 및 서류 제출 일정 ◀

### ▣ 전체 일정

수강기간	2024년 11월 09일(개강) ~ 2025년 2월 21일(종강)	온라인수업+출석수업+현장실습
실습 가능 기간	<b>2024년 11월 11일(월) ~ 2025년 1월 31일(금)</b>	실습가능기간 내 6주 연속 현장에서 240시간 이수 필수 (보육실습규정 준수)

### ▣ 수업 일정

개강 OT	11월 9일 (토)	수도권 1분반	13:30 ~ 16:30	<b>※ ZOOM 온라인 화상수업 (불참 시 이수불가)</b>
종결 평가회	2월 15일 (토)	수도권 1분반	13:30 ~ 16:30	<b>※ ZOOM 온라인 화상수업 (불참 시 이수불가)</b>
온라인 수업	2024년 11월 09일(토) ~ 2025년 02월 21일(금)			<b>기간 내 100% 수강 완료 (미충족 시 이수불가)</b>

### ▣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방법

-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- 실습지원 - 실습지원센터 - 실습자료실(보육실습)

### ▣ 등기 서류 제출 방법

- 주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1길 36 위너스빌딩 3층 보육실습 담당자 앞 (우편번호: 03129)  
**1차, 2차 서류는 모두 [원본] 발송 필수, 현장접수 불가**

## ▣ 서류 제출 안내

**1차 서류 본인의 실습시작 3일전까지 교육원으로 도착할 수 있게 [원본]으로 등기 발송**

1차 서류	
1. 보육실습신청서	
2. 보육실습생 신상카드	[학생] 양식다운로드 후 본인이 작성 ※ 주의: 재직자는 재직증명서, 휴직증명서 모두 제출
3. 보육실습생 서약서	
4. 보육실습 동의서 ( <b>직인필수</b> )	[기관] 본원양식에 실습기관이 작성하여 학생에게 전달
5. 보육실습 주의사항 안내	[학생] 양식다운로드 후 확인란 각 칸에 체크 표시 후 서명하여 제출
6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동의서	[학생] 양식다운로드 후 동의함에 체크 표시 후 서명하여 제출
7.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	[기관] 기관에서 받아서 제출 ※ 위탁계약증서사본(해당사항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만)
8. 어린이집 평가결과서 (또는 평가인증서)	[기관] 기관에서 받아서 제출 ※ 실습기관의 평가상태가 '평가완료'인 어린이집(평가중 · 재평가 · 미평가 등은 인정불가) ※ 확인방법 : 어린이집 · 유치원 통합정보공시(www.childinfo.go.kr) - [검색으로 찾기] - [지역 및 기관명 검색] - [평가] - [평가정보]
9. 지도교사 자격증사본	[기관] 기관에서 받아서 제출 ※ 지도교사는 보육교사1급자격증 소지자+학급담임을 맡고 있어야 함
10. 성적증명서 (또는 이수과목확인서)	[학생] 보육교과목 성적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출

**2차 서류 2월 7일 금요일까지 교육원으로 도착할 수 있게 [원본]으로 등기 발송**

2차 서류	
1. 보육실습일지 (목차 순서대로 책 제본)	[학생] 본 교육원의 양식에 학생이 작성 ※ 링제본, 스프링제본 불가
2. 보육실습확인서	[기관]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원장님이 출력하여 학생에게 전달 ※ 직인필수
3. 보육실습평가서	[기관] 본원양식에 실습기관의 지도자가 직접 작성하여 학생에게 전달 ※ 직인 및 봉인 필수

## ▣ 성적확인 및 학점인정 신청 일정

성적확인	2025년 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후 확인 가능	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www.kstudy.co.kr
학점인정 신청	2025년 4월에 학점인정 신청 가능	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www.cb.or.kr
자격증신청	조건 (과목+학위) 충족 후 개인이 직접 신청	보육교직원 통합정보 <a href="http://chrd.childcare.go.kr/">http://chrd.childcare.go.kr/</a>

## [보육실습 주의사항 안내]

차시		이름	
----	--	----	--

No.	내 용	확인
1	근무지 실습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.	
2	근로자(4대보험 가입자, 아르바이트 등), 사업주, 임산부 등은 반드시 kstudy 담당자 및 교수님과 협의하에 실습을 진행합니다.(재직증명서 + 휴직증명서 반드시 제출)	
3	지도교수님은 실습기관을 사전예고 없이 방문하여 현황파악 및 지도 합니다.	
4	실습시작 전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(구 보건증)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	
5	실습시작 3일전까지 실습1차 서류를 kstudy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- 1차 서류 도착 전 실시한 실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	
6	실습기관은 개별적으로 선정하며, 보육정원 15인 이상,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(평가완료) 이어야 합니다.	
7	보육실습은 평일기준 30일 입니다.(공휴일 제외, 주말 제외) - 평일(월요일~금요일) 오전 9시 ~ 오후 7시 내에 8시간 진행 -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 기준(오전 9시 이전의 실습은 인정 안 됨) - 2인 이상 같은 어린이집에서 실습할 경우, 같은 반에서의 실습은 불허 합니다. - 실습생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(예: 이사, 가족 병간호 등)	
8	실습지도선생님은 반드시 보육교사1급 자격증 또는 유치원정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 이어야합니다.	
9	실습관련양식은 “실습지원센터”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	
10	보육실습의 출석점수(온라인80% +오프라인20%) - 100% 출석 시 이수 가능 합니다. - 실습시간(9시~18시) 내에 강의수강 기록이 있으면 안 됩니다. (실습시간이후(18시 이후) 강의 수강하시기 바랍니다.)	
11	실습일지 작성 시 - 워드나 수기로만 작성합니다. (지도 선생님 일지를 출력하여 잘라서 붙이면 안 됩니다.) - 실습지도교사의 조연은 수기로 작성합니다. ( 워드 작성 시 '지도교사 조연'란에 지도교사 도장 날인 필수 ) - 실습일지 출근부 시간 과 보육실습확인서의 시간입력은 동일하여야 합니다. ( 잘못된 예시 : 출근부 9 - 17시 , 확인서 9 - 18시 입력 x )	
12	실습일지의 결재란은 반드시 도장(실습생, 지도선생님, 원장선생님)을 원칙으로 합니다. (결재란에 서명을 하는 경우, 서명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) - (서명 및 인) : 서명 또는 도장 - (직인) : 어린이집 도장 - (서명인증서) : 실습지원센터>실습자료실 내 다운로드 가능	
13	어린이집 방학 중 실습 시 - 실습지도 선생님, 원아들(통합반도 가능), 실습생 이 모두 나와야 실습으로 인정됩니다. (이 중 한명이라도 없으면 실습 인정 안 됩니다.) - 방학기간이 명시된 가정통신문을 필히 2차 서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(가정통신문 하단 어린이집 직인 필수)	

14	보육 실습확인서 작성 시 - 양성기관명을 정확히 ( <b>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</b> ) 작성하여야 합니다. - 지도교사2명으로 실습을 진행한 경우 확인서에 2명이 지도교사가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. (지도교수 1명 만 등록한 경우 미입력 된 지도교사 이름 수기로 작성(직인) + 실습지도교사1인당 보육실습생3인 이내 지도확인서 (직인) 1부 제출 )	
15	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- 인가증사본,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임을 증빙하는 서류 (1차 필수서류)2부 - 실습지도교사 1인당 보육실습생 3인 이내 지도 확인서(2차 필수서류)1부 - 보육실습확인서(2차 필수서류) 작성시 별도의 양식사용(실습자료실 다운로드)1부	
15	병설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-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(학교장 발행 공문으로 보육정원, 최초 설립일자, 방과후 과정 운영 시작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으로 2부 제출 - 실습지도교사 1인당 보육실습생 3인 이내 지도 확인서 1부 - 보육실습확인서(2차 필수서류) 작성 시 별도의 양식사용(실습자료실 다운로드)1부	
16	부정실습 적발(무단결석, 외출포함)시 모든 책임은 실습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	
17	2차 서류 작성 시 <b>화이트 사용 불가</b> (공적인 서류이므로 수정 시 반드시 다시 출력 후 작성)	
18	출근부 작성 시 '공휴일, 개인 사정, 어린이집 행사 및 사정, 코로나' 등으로 결근했을 경우 - 반드시 출근부에 날짜만 작성 (도장 날인 금지) - 어린이집 행사 및 코로나 관련인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자료 제출 필수 - 실습기간이 변경될 시 행정실로 반드시 연락하여야 함.	
19	<b>코로나로 인한 긴급 보육을 진행하는 경우</b> - 통합보육도 실습으로 인정됩니다. - 실습지도 선생님, 원아, 실습생이 모두 나와야 실습으로 인정됩니다. - 원아가 한명도 등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원에 문의해야 합니다. - 어린이집 전체 휴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원과 교수님께 알려야 합니다. (가정통신문+ 가정통신문 하단 어린이집 직인 필수)	

위에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.

2024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성 명 :

(인 또는 서명)